

2024년도 교육위원회  
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

# 주요 업무 보고

2024. 11.

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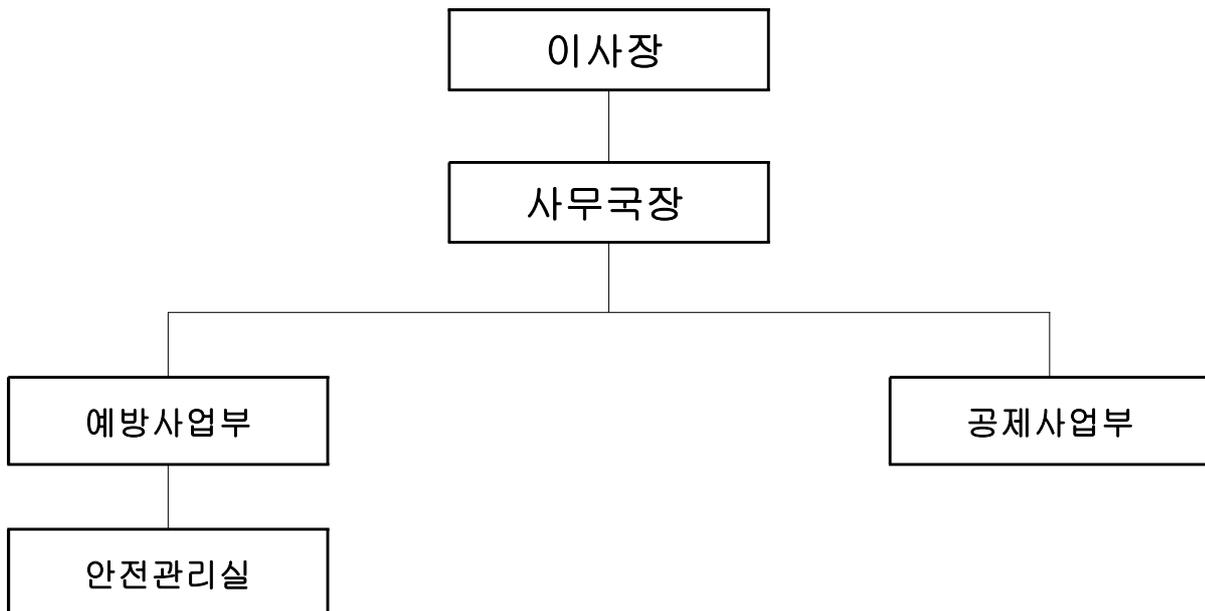
## 일반 현황

### 연혁

- '87. 12. 09. 「민법」에 의한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설립
- '88. 03. 01. 보상업무 개시
- '06. 03. 01. 소방안전점검사업 개시
- '07. 09. 01.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
- '07. 09. 03.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특수법인 설립등기
- '12. 04. 01. 학교폭력피해 지원 개시
- '15. 01. 20.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제도 신설
- '16. 09. 01. 여행자동행공제사업 판매공제 개시
- '20. 05. 13. 교원보호공제사업 개시
- '24. 03. 01. 여행자동행공제사업 보유공제 전환

### 조직 및 정·현원

#### ○ 조직



○ 정·현원

- 특정직 및 일반직

(단위: 명)

| 구분 | 일반직 또는 특정직 | 일반직 |    |    |      | 계  |
|----|------------|-----|----|----|------|----|
|    | 3급 또는 4급   | 5급  | 6급 | 7급 | 8~9급 |    |
| 정원 | 1          | 2   | 4  | 5  | 3    | 15 |
| 현원 | 1*         | 2   | 3  | 2  | 7    | 15 |

\* 서울시교육청 소속 파견공무원(3급)

- 계약직(안전관리실)

(단위: 명)

| 구분 | 실장 | 과장 | 팀장·대리 | 주임 | 계  |
|----|----|----|-------|----|----|
| 정원 | 1  | 4  | 10    | 6  | 21 |
| 현원 | 1  | 4  | 9     | 7  | 21 |

□ 시설현황

- 소재지: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3층, 7층, 지하 1층
- 건물: 601m<sup>2</sup>

(단위: m<sup>2</sup>, 원)

| 구분      | 지하 1층     | 3층          | 7층         | 합계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공급면적    | 56        | 436         | 109        | 601         |
| 임대 보증금  | -         | 184,800,000 | 60,000,000 | 244,800,000 |
| 관리비 보증금 | 3,547,500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3,547,500   |
| 합계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248,347,500 |

## □ 예산현황

(단위: 천원, % '24.9.30. 기준)

| 세부사업              | 2024년도     |            | 2023년도     | 집행액(C)<br>(원인행위기준) | 집행률(%<br>(D=C/B))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본예산(A)     | 예산현액(B)    | 최종예산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공제사업              | 10,953,100 | 11,373,100 | 10,189,111 | 7,840,035          | 68.9              |
| 예방사업              | 189,607    | 189,607    | 171,641    | 32,718             | 17.2              |
| 학교안전사고피해자<br>상담지원 | 30,180     | 30,180     | 26,980     | 16,905             | 56.0              |
| 학교폭력 피해 지원        | 525,990    | 525,990    | 383,663    | 195,392            | 37.1              |
| 업무추진비             | 23,800     | 23,800     | 23,800     | 20,010             | 84.1              |
| 운영비               | 245,466    | 245,466    | 194,815    | 115,670            | 47.1              |
| 인건비               | 1,557,055  | 1,557,055  | 1,525,564  | 753,600            | 48.4              |
| 이월금               | 1,307,009  | 1,567,982  | 3,310,631  | -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
| 계                 | 14,832,207 | 15,513,180 | 15,826,205 | 8,974,330          | 57.8              |

## □ 주요업무별 예산 내역

(단위: 천원, %, '24.9.30. 기준)

| 주요업무명     | 2024년도     |             | 2023년도<br>최종예산 | 집행액(C)<br>(원인행위<br>기준) | 집행률(%<br>(D=C/B)) | 쪽수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   | 본예산<br>(A) | 예산현액<br>(B)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보상사업      | 11,143,370 | 11,543,370  | 10,246,824     | 7,797,141              | 67.5              | 10 |
| 교원보호공제사업  | 1,158,797  | 1,158,797   | 293,908        | 611,112                | 52.7              | 14 |
| 예방사업      | 189,607    | 189,607     | 171,641        | 32,718                 | 17.3              | 19 |
| 여행자동행공제사업 | 508,675    | 592,170     | 444,370        | 162,217                | 27.4              | 24 |
| 소방안전점검사업  | 2,756,000  | 2,933,630   | 2,858,320      | 1,358,371              | 46.3              | 26 |



##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

### □ 성과

-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안정화 방안 마련
  -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안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 포럼 개최
  - 보험 관련 각계 전문가 연구를 통한 기금운용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
  - 교육부, 중앙회 지속적 건의를 통한 2025년 공제료 현실화 유도
  - 여행자공제를 위탁 방식에서 직접 운영으로 전환해 수익과 기금전입 확대
-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급여 지속 지급
  - 청구방식 간편화로 급증한 공제급여 청구에 적극 대응
  - 신속·적정 보상금 지급을 통한 교단 안정 및 학교 분쟁 최소화 도모
- 학교폭력 피해 및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계속
  -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, 치료비 등 실질적 지원
  -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제도 운영 지속
- 교원 및 교육공동체의 분쟁 해결 노력 계속
  -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보장
  -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향상
-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실효성 강화
  - 데이터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보제의 지속 실시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
  - 딥페이크, 마약 등 최근 안전 이슈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추진
  - 안전기관 협력(MOU)을 통한 기관 안전업무 역량 강화

## □ 한계

- 기금 고갈 가속화로 인한 학교안전공제제도 운영 지속 가능성 저하
  - 보상청구방식의 간소화로 공제급여 청구 지속 증가
  -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공제료 규모의 지속적인 축소와 수입 감소 심화
  - 공제료 책정 권한이 외부에 있어 안정적인 수지 관리 제약
- 공제회 예방사업 추진 여건 악화
  - 기금 감소로 예방사업 예산이 축소되어 사업 추진 제약 발생
  - 공제회 인지도 부족으로 단독 사업추진 시 홍보 활동 및 행사 모집 한계
  - 기금 규모의 제약과 운용상 어려움으로 인한 예방사업 인력 투입 한계

## □ 개선 방향

- 공제기금 안정화를 위한 대책 지속 마련
  - 중앙회 지속 건의를 통한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형태 개선 및 공제료 현실화 유도
  -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한 기금 운용 방식의 개선 및 새로운 수익원 발굴
  - 기금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 지속 분석 연구
- 공제회 예방사업의 활성화
  - 예방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예산 등 다양한 재원 활용방식 강구
  -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예방사업 영향력 확대
  - 외부 전문 인력풀 구축을 통한 안전점검, 연수 등 전문성 강화

## 1

## 보상사업

### □ 사업 개요

#### ○ 목적

- 학생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 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
- 학교안전사고의 피해학생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
-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급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기여

#### ○ 근거

- 「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등
- 「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7조 내지 제60조
- 「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3
- 「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
- 「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3조
-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
#### ○ 주요 내용

-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(보상심사위원회 포함)
-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
- 학교폭력 피해 지원

□ '23년 추진 실적

○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및 보상심사위원회

- 공제급여 지급 내역

(단위: 건, 천원)

| 구분        | 지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건수          | 지급금액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|
| 요양급여      | 부상 또는 질병 치료비                   | 19,969        | 6,504,497        |    |
| 장해급여      | 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 있는 경우             | 36            | 2,719,307        |    |
| 간병급여      | 치료 후에도 간병 필요한 경우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 |    |
| 유족급여      |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| 593,508          |    |
| 위로금       | 학교안전사고 외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| 0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 |    |
| <b>합계</b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20,006</b> | <b>9,817,312</b> |    |

-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학교폭력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보상심사위원회 총 4회 개최하여 청구된 46건에 관한 결정 완료

○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

- 피해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총 6건에 대해 10,864천원 지원 완료

○ 학교폭력 피해 지원

- 학교폭력으로 교육감이 정한 전문 심리상담 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은 경우 심리상담비 지원: 186건, 총 170,116천원

-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「의료법」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지원: 55건, 총 139,113천원

추진 목표

| 세부사업명          | 추진 시기 | 물량 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공제급여 지급        | 1~12월 | 요양급여(22,000건)<br>장해급여(23건)<br>간병급여(1건)<br>유족급여(1건)<br>위로금(1건)<br>보상심사위원회(4회)    |
|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| 1~12월 | 자문위원회(4회)<br>상담지원 비용 지급(월 2.5회)<br>상담지원제도 홍보(1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학교폭력 피해 지원     | 1~12월 |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급(200건)<br>치료 및 요양 비용 지급(80건)<br>소송 등 구상 업무 수행(3회)<br>법률자문 수행(5건) |

추진 계획

2024년 주요 개선 사항

- 공제급여 신속, 적정 보상을 위한 지급 기준 개선
- 홈페이지 개편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한 공제제도, 상담지원제도 홍보
-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한 학교폭력 피해 지원금 구상 회수율 개선
- 2025년도 요양급여, 장해급여 지급 기준 개선
  - 학교안전법 개정 사항, 보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및 소송 판례 등을 반영한 보상기준 지속 개선
- 홈페이지 개편과 홍보물 배부를 통한 공제제도,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제도 홍보
  -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공제제도 및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, 학교 및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 추진

-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 후 상환청구권 행사를 통한 재정 건전성 추구
  - 피해학생 지원 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상환청구권 행사
  - 구상금 미납 건에 대한 정기적 최고 통보 및 후속 조치(소송 등) 이행

## □ 추진 실적

-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및 보상심사위원회
  - 요양급여: 16,206건, 5,941,672천원 지급
  - 장해급여: 15건, 1,105,790천원 지급
  - 유족급여: 3건, 530,036천원 지급
  - 보상심사위원회 총 4회 개최하여 청구된 57건에 관한 결정 완료
-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
  -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: 7건, 15,505천원
- 학교폭력 피해 지원
  - 심리상담 및 조언에 대한 지원: 100건, 총 113,655천원
  -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: 34건, 총 54,893천원

## □ 향후 추진 일정

- 공제급여 신청에 대한 신속·적정한 보상 지급: '24.10~12월
- 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통한 상담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제공: '24.10~12월
-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홍보물 배부를 통한 제도 이용 만족도 제고: '24.10~12월

예산 집행 현황

(단위: 천원, %, '24.9.30.기준)

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| 2024년도     |             | 2023년도<br>최종예산 | 집행액          |            | 집행률(%)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주요사업별<br>설명자료<br>쪽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예산        | 예산현액<br>(A) |                | 원인행위액<br>(B) | 지출액<br>(C) | 원인행위액<br>(D=B/A) | 지출액<br>(E=C/A) |                     |
| 공제급여<br>지급                | 10,570,400 | 10,970,400  | 9,819,381      | 7,577,498    | 7,577,498  | 69.1             | 69.1           | 6~7                 |
| 보상심사<br>위원회               | 16,800     | 16,800      | 16,800         | 7,346        | 7,346      | 43.7             | 43.7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학교안전<br>사고<br>피해자<br>상담지원 | 30,180     | 30,180      | 26,980         | 16,905       | 16,905     | 56.0             | 56.0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학교폭력<br>피해지원              | 525,990    | 525,990     | 383,663        | 195,392      | 195,392    | 37.1             | 37.1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| 11,143,370 | 11,543,370  | 10,246,824     | 7,797,141    | 7,797,141  | 67.5             | 67.5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※ 사업비, 운영비 등 전체 예산 기재

문제점 및 애로 사항

- 공제급여 청구 다양화 및 제도 인지도 상승 등으로 인한 청구 급증
- 공제급여 청구 건수 증가로 인한 보상액 급증
- 학교폭력 피해 지원금 소송 절차 전 가해자 측의 자진 변제율 저조

## 2 교원보호공제사업

### □ 사업 개요

#### ○ 목적

-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지원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, 학생·학부모 등에도 신속한 분쟁 및 민원 해결로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

#### ○ 근거
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
-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22조

#### ○ 주요내용

- 사업대상: 서울특별시 국·공·사립학교 교원
- 사업내용: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지원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 및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전문가 개입 및 적절한 지원

| 구분             | 지원내용  |
|----------------|---|
| 위험대처 보호 서비스    | • 교원이 교육활동 중 신변상 위협을 받는 경우, 경호원이 출동하여 보호  |
| 교육활동 침해 예방 컨설팅 | • 교원 또는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식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는 일, 교원의 학교 업무처리 과정 등에서 교육활동 침해 또는 분쟁이 예견되는 경우 전문적 컨설팅 제공 |
|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 | • 교원의 학교 업무처리 과정이나 교육활동 침해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개입하여 분쟁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분            | 지원내용  |
|---------------|---|
|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또는 이와 관련한 사고,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, 학교관리자의 권한에 의한 지휘·감독 업무에 따른 사고 및 교원이 관리 통제하는 타인의 재물에 의한/대한 사고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된 손해 보상</li> </ul>       |
| 소송 “초기대응 플랜”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안으로서, 상대방이 민·형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안 초기부터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,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</li> <li>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교원 1인당 민·형사 각 심급별 660만원 한도로 소송비 지원</li> </ul> |
|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,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 지원</li> </ul>   |
| 마음방역· 마음치유 비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 교원(마음방역), 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원, 학교장 의견서로 확인된 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원,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피해가 인정된 교원(마음치유)</li> </ul>  |
| 재산상 피해 비용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피해 복구비 지원</li> </ul>  |
| 힐링캠프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및 그와 관련 업무로 인해 소진된 교원 대상 힐링캠프 추진</li> </ul>   |

## □ '23년 추진 실적

(단위: 건, 천원)

| 지급 연도 | 구분 | 분쟁 조정  | 배상 책임 | 소송비    | 치료비    | 위험 대처  | 힐링 캠프  | 계       |
|-------|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2023  | 건수 | 60     | 2     | 8      | 65     | 3      | 2      | 140     |
|       | 금액 | 24,850 | 2,277 | 20,500 | 70,841 | 11,590 | 10,494 | 140,552 |

추진 목표

| 세부사업명    | 추진시기  | 물량   |
|----------|-------|--|
| 교원보호공제사업 | 1~12월 | 분쟁조정 서비스(40건)<br>배상책임 지원(7건)<br>소송비 지원(60건)<br>치료비 지원(580건)<br>위험대처 보호 서비스(4건)<br>힐링캠프(1회) |

추진 계획

2024년 주요 개선 사항

- 초기대응 플랜 도입: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, 사안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대응 및 법적 보호 제공
- 교육활동 침해 관련 피해교원 및 소진교원 마음방역 치유 지원 확대
-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후적 처리 중심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, 교육활동 분쟁의 신속한 해결, 피해교원의 회복과 직무복귀 지원으로 선순환 종합지원 체계 구축
- 교원보호공제의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축적된 자료를 정리 및 분석하고, 담보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공유

추진 실적

(단위: 천원, %, '24.9.30.현재)

| 지급<br>연도 | 구분 | 분쟁<br>조정 | 배상<br>책임 | 소송비     | 치료비     | 위험<br>대처 | 힐링<br>캠프 | 계       |
|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2024     | 건수 | 23       | 2        | 52      | 435     | 1        | 0        | 513     |
|          | 금액 | 11,550   | 20,492   | 142,452 | 304,485 | 5,500    | 0        | 484,479 |

**향후 추진 일정**

- 연중 상시 교원보호공제사업 수행

**예산 집행 현황**

(단위: 천원, %, '24.9.30.현재)

| 사업명      | 2024년도    |             | 2023년도<br>최종예산 | 집행액          |            | 집행률(%)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주요사업별<br>설명자료<br>쪽수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본예산       | 예산현액<br>(A) |                | 원인행위액<br>(B) | 지출액<br>(C) | 원인행위액<br>(D=B/A) | 지출액<br>(E=C/A) |                     |
| 교원보호공제사업 | 1,158,797 | 1,158,797   | 293,908        | 611,112      | 611,112    | 52.7             | 52.7           | 11~12               |
| 계        | 1,158,797 | 1,158,797   | 293,908        | 611,112      | 611,112    | 52.7             | 52.7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※ 사업비, 운영비, 인건비, 전출금, 이월금 등 전체 예산 기재

**문제점 및 애로 사항**

-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 필요
- 지원 건수 및 금액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(공제료) 편성 필요

## 3

## 예방사업

### □ 사업 개요

#### ○ 목적

- 피해 복구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으로 변화하는 환경 반영
- 사고 데이터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안전 콘텐츠를 제공해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
- 학교급별, 직무별 맞춤형 안전교육 및 콘텐츠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안전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 유도

#### ○ 근거
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

#### ○ 주요 내용

- 학교안전교육 연수과정 운영 및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
- 빅데이터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시행
- 학생 등 교육수요자가 주도하는 학교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운영
- 교육공동체의 안전사고 예방 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 시행

### □ '23년 추진 실적

#### ○ 학교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

- 교통안전봉사자, 방과후 강사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최초 개발 및 유튜브 보급
- 특수학교 학생 맞춤형 화재 대피 애니메이션 개발·보급

- 학교안전교육 집합 연수 실시
  - 유치원 안전사고 데이터 분석, 사례별 대응, 메타버스 안전교육 방법 등 이론교육 및 소방학교를 통한 체험형 연수 실시
  - 교육행정직 맞춤형 안전교육 15시간 과정 운영 확대(2회→5회)
  - 교육연수원과 교직원 학교안전교육 집합연수과정 협업 운영 추진
- 학교안전문화 확산사업 실시
  - 최근 5년 안전사고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월 우려되는 사고에 대하여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지속 실시
  - 학생이 주도적으로 안전 현안과 대책을 제시하는 학교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지속 실시

추진 목표

| 세부사업명 | 추진시기   | 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예방사업  | 6~11월  | 학교안전교육 콘텐츠 제작(5개)                 |
|       | 8~10월  | 서울 학교안전사고 동향 분석 연구(1개)            |
|       | 4~12월  | 교육행정직 안전교육 집합연수 운영(6회)            |
|       | 3~12월  | 빅데이터 기반 안전사고 예보제(30개)             |
|       | 10~12월 | 학교안전문화 확산 공모전(1개)                 |
|       | 6~9월   | 학교안전컨설팅 운영(13교)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~10월  |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 제도 개선방안 연구(1개) |
|       | 8~9월   |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안정화 방안 정책 포럼(1회)  |

## □ 추진 계획

### '24 주요 개선 사항

- 최신 안전이슈를 반영한 학교안전교육 콘텐츠 제작
  - 기존 학교생활 안전을 넘어 일상 및 재난·위험 요소(딥페이크, 마약 등)까지 포함한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
- 학교안전사고 분석 연구 리포트 생산
  -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사고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사고 동향과 주요 시사점을 도출해 정책적·교육적 개선방안 제언
- 예방 및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 운용방식 개선
  - 보험 수리·경제·법률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기금 부족 원인 및 개선방안 도출
  - 타 안전 및 보상 기금의 우수한 운용사례 비교·분석
- 학교안전교육 콘텐츠 제작
  - 최근 안전사고 사례와 신종 안전이슈를 반영한 유용한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
- 학교안전사고 조사·연구
  - 최근 5년간 서울 학교안전사고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, 이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
- 학교안전교육 집합연수 실시
  - 교육연수원 등과 협업하여 교육행정직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과정 구성, 체험형 안전교육 병행
- 학교안전문화 확산
  - 데이터 분석과 최신 안전이슈를 반영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실시 및 현장성 강화

- 학교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지속 추진으로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
- 학교안전컨설팅
  - 학교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제공하여 공제회의 학교안전 점검 및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
-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정책 포럼 실시
  - 전문가 연구를 통한 타 안전 및 보상 기금의 우수 운용사례 비교·분석, 기금 운용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

## □ 추진 실적

- 학교안전교육 콘텐츠 제작
  - 유치원 등하원, 초등학교 등하교, 휴식시간, 마약, 낙하물 사고 등 최신 학교안전 관련 콘텐츠 제작 추진
  -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협업하여 예산을 분담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
- 학교안전교육 집합 연수 실시
  - 교육연수원 및 서울소방학교와 협력하여 교육행정직 대상 학교 안전교육 집합연수과정 6회 실시
-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실시
  - 최근 발생한 사고 유형(2023년, 2024년 1학기)과 신종 위험 요소 (학교 지진, 뱀페이크)를 분석하여, 이를 반영한 맞춤형 예보제 실시

### <2024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추진 현황>

| 3월                 | 4월     | 5월                | 6월           | 7월            | 8월        | 9월               | 10월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2023년 발생한 심각한 안전사고 | 등하교 사고 | 119 신고된 체육대회 안전사고 | 낙하물, PM 안전사고 | 태풍, 폭우, 지진 사고 | 온열질환, 식중독 | 1학기 발생한 중상해 안전사고 | 뱀페이크, 쉬는시간 안전사고 |

※ 학교안전사고 예보제는 매월 학교안전점검의 날(4일)에 교육청을 통해 배포되며, 교육청 인스타그램, 블로그, 공제회 홈페이지에 탑재

- 학교안전컨설팅 실시
  - 희망학교(13개교)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 및 자발적 컨설팅을 통해 학교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
-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 제도 개선 연구
  - 보험 수리·경제·법률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기금 부족 원인 및 개선 방안 도출
  - 공제료 산정기준 현실화, 보조금 교부의 규모, 책임준비금 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기금운용 개선방안 마련 및 제안
-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안정화 방안 정책 포럼 개최
  - 기금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청 관계자, 학교, 학부모 대상 정책 포럼 개최, 개선방안 및 공감대 형성
- 학교안전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
  - 대한산업안전협회와의 협력으로 안전교육 및 컨설팅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

**□ 향후 추진 일정 :**

- 학교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('24. 11.)
- 서울 학교안전사고 동향 분석 리포트 배포('24. 10.)
- 학생대상 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실시('24. 10.~12.)
- 빅데이터 기반 안전사고 예보제 실시('24. 10.~12.)
  - 11월 예보제: 체육관 내 안전사고, 운동부 안전사고 특집
  - 12월 예보제: 겨울철 안전사고(한랭질환, 빙판, 화재 등)

## □ 예산 집행 현황

(단위: 천원, %, '24.9.30.현재)

| 사업명  | 2024년도  |             | 2023년도<br>최종예산 | 집행액          |            | 집행률(%)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주요사업별<br>설명자료<br>쪽수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| 본예산     | 예산현액<br>(A) |                | 원인행위액<br>(B) | 지출액<br>(C) | 원인행위액<br>(D=B/A) | 지출액<br>(E=C/A) |                     |
| 예방사업 | 189,607 | 189,607     | 171,641        | 32,718       | 32,718     | 17.3             | 17.3           | 15~16               |
| 계    | 189,607 | 189,607     | 171,641        | 32,718       | 32,718     | 17.3             | 17.3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문제점 및 애로 사항

- 학교안전공제 보상금 지급 및 예방사업 용도의 기금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
  - 서울시교육청, 교육연수원과 협업하여 교육청 또는 연수원 예산으로 진행하면서 공제회의 자원(인적, 물적)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예방사업 지속 추진
  - 예방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 예산 등 다양한 재원 활용방식 강구

## 4

## 여행자동행공제사업

### □ 사업 개요

#### ○ 목적

-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여 학교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에 대한 보호 강화

#### ○ 근거

- 「학교안전법」 제18조제2항
- 「학교안전법 시행령」 제10조의5 제3호

#### ○ 주요 내용

- 현장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기존 학교안전공제 외의 보상 확대
  - ※ 학교안전공제 외의 보상범위: 교육활동 종료 후 발생한 사고, 질병, 전염병, 휴대품, 배상책임, 긴급조치비, 입원 위로금 등
- 학교 여행자보험의 가입 절차 간소화 및 담보 항목 확대를 통해 학교 현장의 만족도 제고
- 발생 사고에 대한 분석 및 예방 콘텐츠 제작을 통해 예방사업으로 환류
- 발생 수익금을 서울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 전입하여 학교 보험 재정의 선순환 체계 구축

'23년 추진 실적

- 여행자공제 가입 5,783건, 총 수입 376,205천원, 보험사 이관 제외 공제회 순수입 96,622천원 확보
- 보험사 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형태 전환 검토

추진 목표

| 세부사업명   | 추진시기  | 물량  |
|---------|-------|---|
| 여행자동행공제 | 1~12월 | 직접 운영방식 전환(1개)<br>운영 시스템 구축(1개)<br>기금 전출 실시(65,000천원) |

추진 계획

'24 주요 개선 사항

- 여행자동행공제 직접 운영방식 전환
  - 보험사 위탁방식에서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
- 여행자동행공제 운영 시스템 구축
  - 공제약관 신설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험 사업 체계 확립
- 직접 운영 방식 전환을 통한 순수익 확대로 최초 기금 전출 실시
  - 직접 운영 방식을 통한 순수익 확대로 기금 65,000천원 전출
- 여행자동행공제 직접 운영 방식 전환
  - 보험사 위탁에서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제회 수익 확대 및 기금 전입 활성화
  - 사업계획 수립 및 교육청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, 학교 대상 홍보 강화

- 여행자동행공제 운영 시스템 구축
  - 공제 담보 설계 및 공제(보험) 약관 신설로 보험 운용 체계 확립
  - 여행자동행공제 청구 페이지 구축 및 청구 오류 지속 개선
-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전입을 통한 기금 건전성 제고 추진
  - 발생 수익금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으로 전출하여 재정 선순환 체계 구축

**□ 추진 실적**

- 여행자동행공제 직접 운영 방식 전환(2024. 3.)
  - 공제 약관 및 매뉴얼 신설(2024. 3.)
  - 여행자동행공제 청구 페이지 구축(2024. 3.)
  - 여행자동행공제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및 배포(2024. 3.)
- 발생 수익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으로 전출
  - 발생 수익 중 65,000천원 공제기금으로 전출

(단위: 건, 천원)

| 구분           | 가입건수  | 수입 공제료  | 공제회 순수입 | 전출금   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2024. 9. 30. | 5,949 | 310,066 | 147,850 | 65,000 |
| 2023         | 5,783 | 376,205 | 96,622  | 0      |

※ 공제회 순수입 : 2023년 ~ 2024년 2월에는 공제료의 일정 비율이 보험사로 이관되어 순수입이 제한되었으나, 2024년 3월부터는 공제회가 여행자동행공제를 직접 운영하면서 보험사 이관분이 없어져 순수입 증가

**□ 향후 추진 일정**

- 여행자동행공제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및 배부(2024. 11.)

## □ 예산 집행 현황

(단위: 천원, %, ' 24.9.30.현재)

| 사업명     | 2024년도  |             | 2023년도<br>최종예산 | 집행액          |            | 집행률(%)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주요사업별<br>설명자료<br>쪽수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| 본예산     | 예산현액<br>(A) |                | 원인행위액<br>(B) | 지출액<br>(C) | 원인행위액<br>(D=B/A) | 지출액<br>(E=C/A) |                     |
| 여행자동행공제 | 508,675 | 592,170     | 444,370        | 162,217      | 162,184    | 27.4             | 27.4           | 21~22               |
| 계       | 508,675 | 592,170     | 444,370        | 162,217      | 162,184    | 27.4             | 27.4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문제점 및 애로 사항

- 준비금 부족
  - 공제기금으로부터 출자가 제한되어 있어 대형사고에 대비한 준비금의 지속적 적립 필요
- 민영보험업계 대비 공제보험 상품 경쟁력 강화 필요성 존재
  -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담보 적극 반영하여 민영보험 대비 상품의 경쟁력 향상 지속 노력 필요

## 5 소방안전점검사업

### 사업 개요

- 목적
  - 학교시설에 내재된 화재발생 요인 및 각종 위험요소 사전점검
  -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
- 근거
  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10조의5
  - 「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정관」 제5조의2
- 주요 내용
  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의거 각 학교에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(종합 및 작동점검) 실시

### '23년 추진 실적

- 소방안전점검 계약 체결 현황
  - 계약 학교수 619개교 및 점검 수수료 수입액 2,032,274천원
- 2023년 공제기금으로 500,000천원 전출

### 추진 목표

| 세부사업명  | 추진시기  | 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소방안전점검 | 1~12월 | 적정 점검 수수료 책정 및 550개교 점검 계약 체결 |

추진 계획

2024년 주요 개선 사항

- 표준자체점검비를 적용하여 적정한 점검 수수료 책정
-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응대 능력 향상 직원 CS 교육 시행
- 2024년 소방시설안전점검 계약 체결 550개교
- 2024년 공제기금으로 200,000천원 전출

추진 실적

- 소방시설안전점검 계약 체결 현황
  - 계약 학교수 597개교 및 점검 수수료 수입액 1,661,428천원
- 2024년 공제기금으로 200,000천원 전출

향후 추진 일정

- 서비스 강화로 만족도 제고 및 계약 유지, 적정한 점검 수수료 산정 등을 통해 공제기금 수입 증대에 기여

예산 집행 현황

(단위: 천원, %, '24.9.30.현재)

| 사업명          | 2024년도    |             | 2023년도<br>최종예산 | 집행액          |            | 집행률(%)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주요사업별<br>설명자료<br>쪽수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본예산       | 예산현액<br>(A) |                | 원인행위액<br>(B) | 지출액<br>(C) | 원인행위액<br>(D=B/A) | 지출액<br>(E=C/A) |                     |
| 소방시설<br>안전점검 | 2,756,000 | 2,933,630   | 2,858,320      | 1,358,371    | 1,358,371  | 46.3             | 46.3           | 25                  |
| 계            | 2,756,000 | 2,933,630   | 2,858,320      | 1,358,371    | 1,358,371  | 46.3             | 46.3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문제점 및 애로 사항

- 소방안전점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전출액 수준을 10% 내외로 유지